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1937
----------	-------

제안연월일 : 2025. 8.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011호)	이정현의원	2024.10.29.	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12.1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나.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4.17.) 상정/축조심사 다.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6.27.) 상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672호)	한민수의원	2024.12.18.	가.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3.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나.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4.17.) 상정/축조심사 다.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6.27.) 상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727호)	이훈기의원	2024.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787호)	최민희의원	2024.12.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801호)	황정아의원	2024.12.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839호)	박민규의원	2024.12.23.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840호)	노종면의원	2024.12.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901호)	조인철의원	2024.12.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050호)	김현의원	2024.12.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150호)	이해민의원	2024.12.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216호)	이정현의원	2025.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263호)	김우영의원	2025.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356호)	서영교의원	2025.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316호)	신장식의원	2025.3.25.	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4.15.) 나.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4.17.) 상정/축조심사 다.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6.27.) 상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801호)	노종면의원	2025.4.14.	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6.9.) 나.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6.27.) 상정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670호)	한민수의원	2024.12.18.	가.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3.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나.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4.17.) 상정/축조심사 다.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6.27.) 상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725호)	이훈기의원	2024.12.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282호)	김우영의원	2025.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368호)	서영교의원	2025.1.9.	

가.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

7. 2.)에서 위 1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7. 7.)

에서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

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고 함.

나아가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편성위원회 및 방송편성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장추천위원회와 주요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근거를 마련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6항).

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사내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 항목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라.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공사의 시청자위원회, 공사의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

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

바.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이사회 임명제청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함(안 제46조제8항 및 제9항).

사. 이사 및 집행기관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안 제47조제1항)

아. 한국방송공사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50조의2 신설).

자.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편성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87조제1항 및 제2항).

차.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대상 확대에 맞추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88조부터 제90조).

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편성위원회 제청 없이 방송 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편성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지 않고 시청

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106조 및 제 108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 製作”을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취재·보도·제작·편성”으로, “취재 및 製作”을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으로, “제정하고”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제3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및 그 준수 여부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의결사항 준수

여부

제2장에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를 말한다)의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각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②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11人”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理事는”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6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숫점 이하 수가 가장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숫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	=	6	×	해당 교섭단체 의석수	÷	각 교섭단체 의석수의 합계
------------------	---	---	---	----------------	---	-------------------

2. 공사의 시청자위원회(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2개의 변호사 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으로 2명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⑩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 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
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에 따
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제1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계”를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團體의”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로 한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5. 위성방송사업자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

제88조제1항제1호 중 “放送編成”을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를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放送事業者는”을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제87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방송사업자”로 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조의2에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제108조제1항제1호 중 “위반하여 放送編成責任者の 姓名을 放送시간 내에 매일 1회 이상 公表하지 아니한 者”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4 및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2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나.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

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의2. 제87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106조·제10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관한 경

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및 보도책임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추천”을 “임명제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放送事業者는 放送編成責任者를 선임하고, 그 姓名을 放送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公表하여야 하며, 放送編成責任者の 자율적인 放送編成을 보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④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製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製作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취재·보도·제작·편성-----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제정 또는 개정하고-----.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신 설>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에 관한 사항

4.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第17條(再許可 등) ① . 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再承認을 할 때에는 第10條第1項各號 및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고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1. ~ 5의2. (생략)

<신설>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 요건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17條(再許可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제

<신 설>

6. (생 략)

④ (생 략)

<신 설>

· 개정 및 그 준수 여부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의결사
항 준수 여부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
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
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
진흥회를 말한다)의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둔
다. 이 경우 각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
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

<신 설>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생략)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이사 11人으로 구성한다.
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후단 신설>

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성위원회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5명-----.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 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6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숫점 이하 수가 가장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숫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begin{array}{l} \text{각} \\ \text{교섭단체별} \\ \text{추천인 수} \end{array} = 6 \times \begin{array}{l} \text{해당 교섭단체} \\ \text{의석수} \end{array} \div \begin{array}{l} \text{각 교섭단체} \\ \text{의석수의 합계} \end{array}$$

<신 설>

2. 공사의 시청자위원회(제43조 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신 설>

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신 설>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

<신 설>

<신 설>

④ ~ ⑥ (생 략)

⑦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
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단서
신설>

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
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
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
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2개
의 변호사 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으로 2명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
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
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
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제4조제4항에 따른 방
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⑧ -----
----- . 다만, 제
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에 따른

<신 설>

<신 설>

⑧ · ⑨ (생 략)

第47條(理事의 任期) ①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
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
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
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
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
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
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
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⑩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
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
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⑪ · ⑫ (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

第47條(理事의 任期) ① -----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理事會
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
議決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 15. (생 략)

② (생 략)

<신 설>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
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
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
의9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여론
조사기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
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
족하는 기관에 위원회 구성 업
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

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第87條(視聽者委員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の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어야 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放送事業者는 각계의 視聽者를 대표할 수 있는 者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團體의 추천을 받아 視聽者委員會의 委員을 위촉한다.

第87條(視聽者委員會) ① -----

-----.

1. 지상과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5. 위성방송사업자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

② -----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제4호부터 제

③ (생략)

第88條(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직무) ① 視聽者委員會의 權限
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放送編成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 4. (생략)

② 視聽者委員會의 代表者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第89條(視聽者 評價프로그램) ①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해당 放
送事業者의 放送운영과 放送프
로그램에 관한 視聽者의 의견
을 수렴하여 週當 60分 이상의
視聽者 評價프로그램을 編成하
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第90條(放送事業者의 義務) ① 다

8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방송
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
의-----
-----.

③ (현행과 같음)

第88條(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직무) ① -----
-----.

1.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
과 운영-----

2. ~ 4. (현행과 같음)

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
통신위원회-----
-----.

第89條(視聽者 評價프로그램) ①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
사업자-----

-----.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90條(放送事業者의 義務) ① 제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放送事業者는 第88條第1項第1號 및 제2호에 따른 視聽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u> <u>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u> <u>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u> <u>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u> ② (생략) ③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④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委員會의 審議結果 및 그 처리</u>	<u>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u> ----- ----- ----- ----- -----.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③ <u>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 ----- ----- ----- -----. ④ <u>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u> ----- -----
--	---

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략)

第106條(罰則)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략)

<신설>

2. ~ 6. (생략)

② (생략)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編成責任者의 姓名을 放送시간내에 매일 1回 이상 公表하지 아니한 者

-----.

-----제87

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방송사업자-----

-----.

⑤ (현행과 같음)

第106條(罰則) ①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조의2에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 -----

1.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u><신 설></u>	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 거나(제4조의2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방송편성책임자 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u><신 설></u>	나.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 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u><신 설></u>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 니한 자
<u><신 설></u>	1의3.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u>1의2. · 1의3. (생 략)</u>	<u>1의4. · 1의5. (현행 제1호의2 및 제1호의3과 같음)</u>
2. ~ 21. (생 략)	2. ~ 2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1의2. 제87조제2항에 따른 추 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청자위 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u>
22. ~ 28. (생 략)	22. ~ 28.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